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937호

이 조례 및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불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내 무연고자에게 장례의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여 고인의 존엄성 유지를 돋고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영장례 조례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안 제3조~제4조)
- 다. 공영장례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내용(안 제5조~제7조)
- 라. 공영장례 지원신청 및 결정, 사후관리, 시행규칙(안 제8조~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1월 5일까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생활보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harbyeol@junggu.seoul.kr

2)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생활보장과(예관동, 중구청)

3) 팩스: 02-3396-873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생활보장과(전화: 02-3396-53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5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제6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고인예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民間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시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공영장례 보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구 내에서 사망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연고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서울특별시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구청장·동장·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4.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 사별자의 애도와 추모가 가능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봉안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수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제5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지원 대상자는 구청장이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

② 제5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망자는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결정한다.

제9조(지원결과 관리)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공영 장례지원의 목적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비용환수) 구청장은 제9조의 조사 결과, 제8조에 따른 연고자 및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